

韓國技術士制度의 改善

(社)韓國技術士會 理事 鄭 晎 琥*

1. 韓國의 技術士法制定과 要點

1-1 技術士法의 制定

韓國에서의 技術士法은 1963年 11月 11日 法律 第1442號로 制定하고 公布되었다. 이 法의 主管部處는 經濟企劃院이었고 法律은 總 38條로 構成되었으며, 이 法에서 定하는 主된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2 技術士法의 要點

가. 法의 趣旨

公布當時의 國內經濟狀態는 GNP가 總 150 弗內外인 것으로 科學技術力を 基幹으로 해서 落後한 國家經濟力を 크게 開發해야 할 것을 認識하고, 우선 國內의 技術力を 發掘할 것에 重點이 있었다.

한편 經濟界에서는 國家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세우고, 점차 技術能力의 伸張으로 經濟發展을 위한 起動역활에 充負시킬 것을 劃策한 것이다.

나. 總則(第1章)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관한 高等의 專門知識와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이 있는 資格者라 했으며, 科學技術部門으로서는 農業, 水產, 林業, 電氣, 機械, 化工, 纖維, 金屬, 鑄業, 船舶, 航空機, 建設, 應用理學인 13個部門으로 나누었다.

다. 登錄(第2章)

技術士試驗에 合格한 者가 經濟企劃院에 登錄.

라. 試驗(第3章)

大學卒業後 滿 7年 이상 應試技術部門에 關한 實務經驗이 있는 者로서 筆記와 口述試驗 및 經歷審查에서 合格한 者(1964年에 第1回 64名이 合格)

마. 業務(第4章)

技術士는 다음과 같은 事業에 活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1) 國家・公共團體 및 政府管理企業體가 營爲하는 中요한 事業
 - 2) 長期經濟開發事業
 - 3) 外資導入事業 중 中요한 事業
 - 4) 기타 特히 中요한 公益事業
- 물론 技術士의 稱號는 資格認定을 받지 아니한 者가 사용할 수 없고, 業務상 知得할 秘密을 保全해야 할 責任이 있었다.

바) 技術士管理委員會

技術士에 關한 試驗・登錄・運營事項을 管理하고, 그 委員長은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委嘱한 것이다.

사. 韓國技術士會

- 1) 1965. 2. 16 創立하고 法人(特殊)認可는 1965. 3. 15에 經濟企劃院長官으로부터 받음.
- 2) 1967. 3. 30 科學技術處가 新設됨으로 技術士法의 主管部處로 바뀌고 法人認可도 變更.

2. 技術士의 權益과 活用問題

2-1 1次的인 問題(技術士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技術士들은 技術士法

* 生產管理技術士(工場管理)

에 의해서 國家經濟事業 등 重要한 事業에 活用하기로 定해져 있었고, 重要公共機關에의 採用이나 外資導入事業에 對한 技術檢討 등 重要事業에 關與한 것이 1967~69 年度의 일이었고 多少 活發했었다.

이때 技術士들은 1~6 回까지 210 名이 合格登錄을 했으나 業務量의 減少로 이들의 活用機會는 점점 稀薄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70 年~73 年까지는 335 名(1~10 回)의 技術士가 輩出되고 있어 先進外國에 比하면 增加比率이 極히 低調한 理由로는 應試合格率도 應試者數의 10%~15% 정도에 지나지 않는 嚴格한 試驗制度에도 起因한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지금 도리켜보면 每年 平均 30 餘名의 技術士合格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活用問題에 對해서는 크게 注目하게 된 것이다.

70 年 이후에는 전혀 技術士 活用이나 登用등의 길이 閉鎖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다만 個人的인(技術士資格이 아닌) 業務關與進行은 있었지만 資格活用은 전혀 없게 되었던 것이다.

2-2 2 次的인 問題發生(技術士法)

一般的인 國內 技術界로서의 主된 움직임은 建設部門이였으며, 建設에 關한企劃, 設計등이였고 技術士法으로서 技術士事務所등의 開設申告制가 있어 技術用役業務遂行을 하고자 50~60 個所가 設置되었으나, 建設이외는 모두가 開設休業의 狀態에 불과했으나, 그나마도 跛行的인 것이였다.

따라서 技術士法 第4章 業務에서 定한 技術士의 活用을 補強하는 作業着手가 繁迫해졌고 한때는 無用인 技術士資格을 全員自進返納하겠다는 危機까지 불어닥쳤던 것이다.

사실상 이때만해도 技術士法 自體만으로는 대단히 無機能化 했던 것으로 다른 聯關法에는 全혀 技術士法에서 定한 活用條文의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無氣力했기 때문인 것이다(다만 活用法條文은 認定하나 實際的인 活用은 實現되지 않았음).

2-3 3 次의인 問題解決(技術用役育成法)

技術士法 第4章 業務를 補強해서 技術士業務

를 保障하게 하는 條文追加를 해보려고 했으나 이를 收容하려는 技術用役條文을 넣기에는 너무 狹少했고, 설령 이를 改定했다 해도 그 效力이 微弱할 것을 감안하고 볼 때 技術士가 主關聯된 獨立法의 制定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鉤기야 技術士一同은 1971.3.20에 大統領 이하 全長官에게 「技術用役育成法을 早速히 制定하여 주실 것」을 建議하고 「國家에서 資格을 認定한 技術士에 對한 優待政策의 實現」을 促求하게 된 것이다.

이 建議가 政府에 即效가 있어 1973.2.5 현재의 技術用役育成法(法律 第2474號)이 制定公布된 것이다.

가. 技術用役의 定義(法 第2條)

技術用役의 定義를 『他人의 委託에 의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應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 研究, 設計, 分析, 調査, 購買, 調達, 試驗, 鑑理, 試運轉, 評價, 諮問 및 指導를 하는 것, 其他 大統領이 定하는 것』으로 하고, 技術士의 定義와 그 本義를 一致化시킨 것이다.

나. 技術用役의 種類와 登錄要件

綜合技術用役業, 專門技術用役業, 個人技術用役業으로 區分하고, 該當科學技術部門의 技術士 1人 이상을 두게 한 것이다.

다. 技術士數의 不足와 認定技術士

1~10回(73年)까지의 技術士數는 335名이라고 했지만, 大學教授, 國家公務員, 公共團體 및 會社(非技術用役) 등에 從事하는 者를 除外하고 보면, 技術用役業에 參與할 수 있는 數는 불과 50~60名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득이 認定技術士(非資格)制度를 잠정적으로 두고, 技術士數가 下足하거나 없는 分野는 認定技術士로(建設以外) 代置하게 한 것이다(時效 7年間, 延期 2年).

라. 技術士活用의 實現

이 制度의 施行에 따라 技術士業務를 하고자 하는 技術士들은 거의 全員이 技術用役業務에 參加하고 活發한 움직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實現過程中에는 主로 建設分野가相當한 育成發展이 있었고, 例컨데 工場建設 등 PLANT 關係에 있어서는 聯關되는 技術分野의 活發性도 있었으나 建設聯關이외의 技術分野는 대

부분이 非活性의인 것으로 되고 만 것이다.

마. 技術用役育成法의 趨旨

當初에 技術士業務補強의 뜻에서 擴大된 技術用役育成法에 따라 韓國技術用役協會가 設立되어 韓國技術士會와 同伴되어야 할 性格의 것하였다.

한때는 이 法의 根本의in 趨旨의 離脫을 막기 위해서, 技術用役業의 代表者를 技術士로 했고, 逐行業務의 結果는 技術士의署名捺印이 있어야 할 것으로 規定한 일도 있었으나, 國家經濟 및 產業發展에 寄與할 參된 品質의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鬪立이나 粗雜性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大多數의 技術士들은 財貨의in 資本家가 아니고 頭腦의in 資本家이기 때문에 두 資本間의 結合이 있어야만 大規模의in 技術用役의 綜合의in 業態를 形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綜合技術用役業體는 技術士와 共同代表制등이 發生한 것이다.

또한 大部分의 認定技術士들도 9年の 餘裕期間동안에 正式技術士資格을 얻어 많은 轉換이 있어 技術用役에 參與하는 保障을 받고 있다.

3. 技術資格間의 “트라ブル”과 整理

3-1 資格間의 “트라ブル”

“技術士”가 技術士法에 의해서 資格이 附與되었지만, 政府의 많은 部處에서 주어지는 技術·技能等의 資格이 있어一般的으로 優劣이나 先後의 資格間의 区別이 없어 많은 混線과混亂이 蒙起되었다. 技術士도 그呼稱에 있어 “○○○ 技術士” 등의 称號가 있어 實際상 어느쪽이 上位고 下位인지 識別이 되지않아 社會的으로 同一視 당하는 事例등이 있어 各種資格者の 人員數가 增加되기 前에 早速히 整理系列化되어야 할 必要性이 생긴 것이다.

- 가. 建設業法에 의한 建設技術者甲類(土木·建築·機械) 1,041名과(乙·丙類)
- 나. 道路運送法, 職業訓練法에 의한 整備土, 技能士, (각 1, 2, 3 級)
- 다. 計量法에 의한 計量士(1, 2, 3 級)

라.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主任技術者(1, 2, 3 級)

마.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技術者(甲·乙類)

바. 電波管理法 및 職業訓練法에 의한 無線通信士와 技能士(1, 2, 3 級)

사. 電氣通信法에 의한 有線技術士(1, 2 級)

자. 地籍測量士規定에 의한 測量士

차. 其他 社會團體등에 의해서 任意로 定한 ○○○技術士, △技術士, ××技術士

3-2 技術資格의 定立과 法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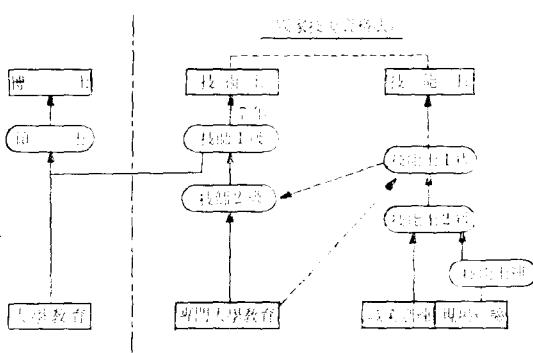
1970年을 넘기면서 本會立場으로 보아서는, 各種의 資格間의呼稱이나 社會地位에서의混同을 막고, 國家의in 見地로 보아서도 하루速히 資格者の 集約series화 整理를 함으로서 技術土地位와 權益保障이 될 수 있을 것을 믿고,當時의 科學技術處長官에게 이를建議해서 法制定이 되게 한 것이다.

가.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과 定義

1973. 12. 31에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公布實現이 되고 『技術資格이라함은 機械, 金屬, 化工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 土木, 建築, 織維, 鑛業 및 其他 產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이 定하는 技術分野의 1資格』이라 定義하고 있어 技術士法을 根幹으로 해서 定한 것이다.

나. 法의 構成

法條文은 17個條로 나뉘서 資格의 取得, 受



〈그림-1〉 同等한 社會的待遇

檢, 優待, 誠實義務, 主管部處의 權限等으로 構成한 것이다.

다. 法이 갖는 基本理念과 系列化

<그림-1>에 表示한 바와 같이 모든 種類의 技術, 技能資格을 系列化 整理하고, 社會·經濟的 인 待遇나 地位를 博士, 技術士, 技能長線에서同一하게 維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基本理念으로 發達한 것이다며, 이 法制定을 위해서當時의 많은 關係公務員과 關係者들이 1年餘의 長時日에 걸쳐서 心血을 기울이고 労苦한 뜻깊은 하나의 科學技術的 作品인 것을 附言해 둔다.

라. 技術士法의 廢止

技術士法과 國家技術資格法間의 關係에서 보면 技術士法의 技能이 第6章 韓國技術士會에

〈表-1〉

技 術 士 法		國 家 技 術 資 格 法	
法	施 行 令	法	施 行 令
1. 目 的	→(目的)		
2. 定 義		→(表)	
3. 科 學 技 術 部 門		→(表)	
4. 試 驗	→(受檢)	→(表)	
5. 登 錄	→(登錄)	→	
6. 業 務(活用)	→(優待)		
7. 管 理 委 員 會		→運營·諮詢委員會	
韓 國			
8. 技 術 士 會 (特殊法人)	社團法人(科技處)	

〈表-2〉

技 術 資 格 人 力 現 況

主務部處	(經濟企劃院) 科學技術處	關 係 法		勞動部(廳), 建設部, 電信部等		
		技 術 士	各 法	(現) 技師(1, 2級)	(現) 技能士(各級)	人員數計
1964	64					
1970	241					
1973	335					
1974	· 1,421 (建設技術者甲類 1,018名을 包含)	國家 技 術 資 格 法				
1984	4,232			550,000	80,000	1,354,232
	0.3%			40.6%	59.1%	100.0%
1985	4,453					

關한 法을 除外하고는 모두가 國家技術資格法에 同等 또는 施行令으로 格下되어 吸收된 것이다.

따라서 技術士法은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 12. 31 制定公布됨에 따라 公布日로부터 6個月의 經過期間을 두고 1974. 6. 30 付로 廢止되었다.

마. 技術士會의 法人性格

事實상 技術士會의 法人性格은 技術士法廢止로 法人性格을 變更해야 하기 때문에 1977. 9. 17에 社團法人으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變更한 것이다.

4. 技術人力檢定과 豐出狀態

技術技能에 關한 檢定이 각 主管部處別로 계속되다가 韓國技術檢定公團法이 1976. 11. 5에 公布됨에 따라 1977年부터는 檢定業務을 施行해 온 것이다.

<表-2>에서와 같이 1973年까지 技術士數는 335名이었으나 建設業法에서 資格을 取得한 建設技術者甲類 1,018名이

建設技術者甲類(土木)→土木技術士(施工)
建設技術者甲類(建築)→建築技術士(施工)
建設技術者甲類(機械)→機械技術士(建設機械)
와 같이 本來의 技術士와 함께 合流하게 되어 1974年에 1,421名으로 急增하게 되었다.
1984年末 現在로 보면, 技術士總數가 4,232

名이고, 技師系가 550,000 名, 技能系 800,000 名으로 總合 1,354,232 名이다.

構成比率로 보면 技能系 59.1%, 技師가 40.6% 이고 단지 數的인 比率에서 보면 技術士는 0.3%에 불과하다.

5. 80 年代에서의 變化

가. 國家技術資格法의 移管

技術과 技能人力에 關한 資格附與制度인 國家技術資格法이 科學 技術處所管이 있으나, 實質의 인 人力資格의 管掌은 總人員의 0.3%인 技術士만이 있고, 大多數가 勞動部所管에 해당되기 때문에 1981. 12. 31 日付로 法所管의 權限이 勞動部로 移管되었다.

따라서 韓國技術檢定公團도 勞動部傘下로 移轉되면서 오늘의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으로 改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法에서 정하는 定義도 83. 12. 20 改定하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

『技術資格이라 함은 產業과 關聯이 있는 技術分野로서 大統領이 定하는 技術士, 技能長등 技術分野의 資格을 말한다』라고 한 것이다.

나. 技術分野의 擴大

當初 技術士法에서의 13 個 科學技術部門은 20 個 科學技術分野로 擴大되었으며, 그 分野는 機械, 金屬, 化工, 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土木, 建築, 纖維, 鐵業, 情報處理, 에너지, 國土開發, 海洋, 安全管理, 生產管理, 產業應用, 環境管理와 같이 되고 있으며, 資格種目은 100 個種目으로 分類되고 있다.

다. 技術用役育成法에서의 代理資格

이 法에서 遂行할 수 있는 主된 技術者가 技術士이나 그 參加人員이 不足될 경우 代理役割을 하게 되는 認定技術士制는 7年에서 2年을 더 延期한 時限이 1984年 12月이었다. 그러나 技術分野나 種目的 發生등의 理由로 認定技術士는 廢止되었으나 “高級技術者”라는 名目으로 全面적으로大幅增加시키려는 意圖에서 無期限의 인 情勢로 이를 改定立法하려 했으나 이를 遏止시키고 從前과 같이 技術士가 主導하는 技術用役이 되게 하면서, 時限付인 1987年末까지 1

部分만 高級技術者制를 두게 하였다.

6. 技術士制度上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가. 資格法에서의 定義와 性格問題

資格法 第2條에서 技術士, 技能長등의 技術分野의 資格이라고만 定義했을 뿐, 法施行令에서 파기 技術士法에서처럼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等의 專門知識……” 등과 같은 定義가 脫落되고 있어 技術士와 技能長등에 관한 法의 性格이 全혀 缺如되고 있는 盲點을 지니고 있어 技術士의 性格의 地位가 대단히 不分明해지고 있는 것 같다.

나. 技術士의 管理問題

技術士의 數가 幾百일 때의 少數에서도 그 活用에 관한 問題가 크게 問題視되고 資格의 混亂에서 오는 社會的인 保障에 있어서도 問題의 發生이 있었기 때문에 2個法의 制定까지 보았던 것이다.

이제 技術士數는 問題가 發生되었을 때의 300餘名에 비하면 10餘倍나 增加되었고, 앞으로 繼續되는 輩出增加는 며지 않아 萬名線에 肉迫하게 될 것이며, 國內 高等의 技術力의 充滿狀態를 보게 될 것이다.

科學技術의 尖端化와 新技術分野의 發生과 需要의 增加가 있다고 하지만 各分野별로 보아서는 饱和와 不足의 交叉現狀이 생기고, 이들의 活用問題는 더욱 深刻해질 것이다.

더우기 技師와 技能士와 같이 勞動部에서 適材適所인 企業體에 就業시키는 것과는 全혀 그 次元에 差異가 많아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國家의 長期的인 科學技術의 發展과 經濟伸長의 將來를 바라 볼 때는 技術士의 活用과 管理하는데 積極化될 수 있는 新로운 高次元에서의 制度發生은 必然的인 것이라 할 것이다.

다. 技術士 制度의 改善方向

技術士業務를 專業으로 遂行하고자 할 때 發生되는 技術士로서의 高級頭腦는 大體로 보아 3種類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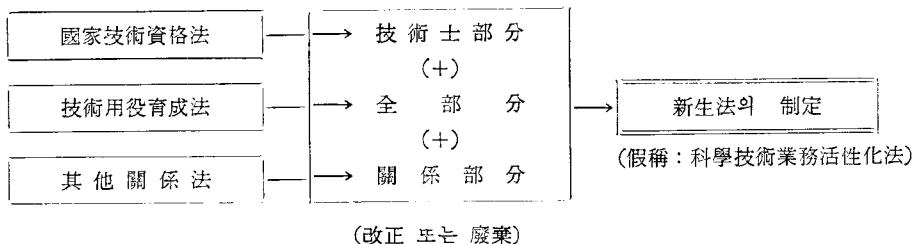
“첫째” 技術士로서의 資格을 처음 取得하였을 時點

“둘째” 技術士로서 專業하고 있는 者중에서 그 業務量이 減少하거나 中斷되고 있을 때 이에 對한 補充과 活性化가 되어야 할 時點

“셋째” 政府機關, 學界, 公共團體, 一般事業體에서 技術士資格者가 停年이나 其他 事由로 因해서 그 業務가 停止된 時點에서 技術士專業을 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時點에서 技術士 活用力이 缺을 경 우가 發生되고 持續化된다는 것은 頭腦資本을 死藏化시키는 것과 同一한 것이되기 때문에 國家社會의in 科學技術力이나, 經濟力發展에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 “푸러스”는 되지 못한다.

〈그림-3〉



라. 結 言

“技術士”라는 資格을 取得한 個個人을 보면 어느 範圍의 科學技術에 관한 頭腦的인 能力を 自負할 뿐, 頭腦資本을 財貨的 資本化로 轉換시키는데는 대단히 微弱하면서一般的인 善良性에 屬한다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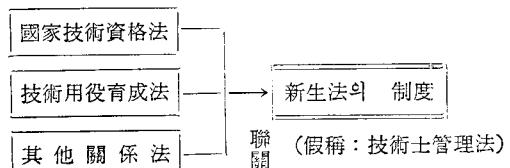
換言하면 市場에서 販賣할 수 있는 商品도 決코 아니고 보면, 他專門職種에서 法的인 保護管理下에서 正當한 自己 專門職權益을 갖고 주어지는 自己業務遂行이 있어야 비로소 頭腦資本力은 經濟的 資本化로 價值轉換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實情은 技術資格制度로 能力있는

따라서 이 頭腦資本의 實用資本化를 위해서는 制度의in 改善의 誘發이 되어야 할 現時點에 이르른 것이다.

根本的인 制度改善方向으로는 主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流型을 말할 수 있다.

第1方向(提案)

〈그림-2〉



第2方向(提案)

個人에게 資格을 國家的으로 附與했을 뿐 活用이나 管理가 部分的인 것 以外는 거이 放置하다 시피 하고 있는 것은, 國家의in 經濟的 資本化에 큰 損失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技術士를 管理하는 法制度나, 科學技術力의 活性化等으로 技術士를 積極的인 活用이 되는 法制度의誕生은 必須的인 것이라 하였으며, 技術士로서의 專門業務遂行에 良은 機會가 隨時 適切하게 附與되게 해야 할 것이다.